

# 본회, 사료 및 축산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건의

- 대통령, 국회, 경제기획원, 재무부, 민정당에 건의서 제출

본회를 비롯한 11개 축산단체로 구성된 한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전동용)와 민정당 중앙위 농림축산분과위원회(위원장: 전동용)은 지난 4월 20일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건의서」를 작성, 대통령, 민정당 대표위원(중앙위의장,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수산위원장, 재무위원장,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최고기 수입재개원 243개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 예시 발표로 국내 축산업이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축산업의 생존과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20만 양축농민의 숙원사항인 사료, 동물약품, 축산기계 등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음은 건의서 전문이다.

##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건의

- 축산물 수입개방 대응방안 일환 -

최고기 수입재개와 243개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에 시로 (별표1참조) 국내 축산업이 살아남기가 점차 어렵게 되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일환으로 국내 축산업의 생존과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120만 양축농가를 숙원사항인 사료, 동물약품, 축산기계 등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이 간곡히 건의하오니 국가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

- ① 축산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되어 그 생산물을 거래하는데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징수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견 부가가치세법상 특별한 혜택을 입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우나

- ② 현재의 축산업자는 사료를 비롯하여 축산기자재를 매입할 때 사료가격 및 자재구입비 이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추가로 지불(별표2,3참조)하여야만 사료 및 축산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담세자는 실제로 사료를 매입하는 축산업자이며 사료공장과 기자재 메이커는 그 축산업자가 부담한 세금을 합하여 3개월에 한번씩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래징수자(납세자)입니다.
- ③ 따라서 현재의 축산업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한 수혜자가 아니라 최종부담자의 위치에 있으며 그 부담액은 축산업자가 지출하는 사료비, 약품비, 자재비, 시설장치비, 광열비 등 인건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출금액에 10%의 과중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으로써

- ④ 이 부담액의 합계액은 농장전체 판매액의 약 7%수준에 달해 생산원가 상승으로 축산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 ① 축산업자는 본인이 매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만하고 본인이 부담한 세액을 타인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원가의 한 요소가 되어 그 만큼 생산원가가 상승되고 그 만큼 손해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② 축산물의 판매가격은 독과점품목이나 정부결정 가격품목처럼 원가에 이윤을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가격형성체계가 아니라 완전 경쟁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때로는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형성이 비일비재하며, 이러한 이유로 축산업자는 사료업자로부터 전가받은 부가가

치세 10%상당액을 다시 다른 유통업자나 식육가공업자에게 전가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 ③ 더욱이,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예시로 국내 축산업자는 향후 국내 축산물가격보다 월등히 생산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붙은 국제가격과 경쟁하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국내 생산원가로서는 도저히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건의**

축산물 생산원가절감 및 품질개선 등으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길러야 국제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축산물 생산비중 경쟁국보다 월등히 비싼 사료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써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사료,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국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축산업자의 사료매입시 부가가치세의 연간 부담액 추정

<p>▲ 부담액(88년기준) : 1,414억원</p> <p>▲ 산출근거</p> <p>8,683천톤<sup>(1)</sup> × 16,283원<sup>(2)</sup> = 1,414억원</p>
--

주 (1) 88년도 일반사료공장 생산공급량(축협사료는 제외)

자료) 농림수산부, 배합사료생산 및 원료생산실적, 89.1.23

(2) 사료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격과 면세 공급가격 차액(별표3참조)

자료) 한국사료협회 배합사료원가추정, 88.12월

〈별표2〉 배합사료 매입원가 비교('88.12)

(단위: 원/톤)

구 분	현 행 (A)	부가세면세 (B)	차 액 (B-A)
1. 원 재 료 비	143,443	146,008	2,565
○ 원 료 비	146,008	146,008	-
○ 의 제 매 입	△2,565	-	2,565
세 액 공 제			
2. 제 조 경 비	10,930	10,930	-
3. 제 조 원 가 (1+2)	154,373	156,938	2,565
4. 판 매 관 리 비	29,364	29,364	-
5. 판 매 원 가 (3+4)	183,737	186,302	2,565
6. 이 윤 3%	5,521	5,589	77
7. 부 가 가 치 세 (5+6) × 10%	18,925	-	△18,925
8. 공 장 도 가 격 (5+6+7)	208,174	191,891	△16,283

자료) 한국사료협회, 배합사료원가추정 '88.12